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934

발의연월일: 2023. 2. 10.

발 의 자:위성곤·양정숙·이개호

신정훈 · 송재호 · 강민정

김한규ㆍ허 영ㆍ최인호

김승남 · 서영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안폐기물·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 등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초단체장이 수거 등의 조치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행 완료 여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써 이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해안폐기물·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의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은 조치명령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소하천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군수·구청장의 행정체제를 고려한 법문을 구성한 반면 「해양폐기 물관리법」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문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특 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도록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법률 제 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①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 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한

다.

제37조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u>특</u>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u>시</u>
<u>별자치도지사・시장</u> ・군수・구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	<u> 함한다. 이하 같다)</u>
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
② <u>특별자치도지사·시장</u> ·군	② <u>시장</u>
수 · 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	
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특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u>시</u>
<u>별자치도지사・시장</u> ・군수・구	<u> 장</u>
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	
방 및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	
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① 제8조제3항, 제12
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
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
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
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u>해역관리청 또는 시장·군수·</u>
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
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대집행)
시장

부터 징수할 수 있다.

- 1. ~ 6. (생 략)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12조제2항에 따른 <u>특별자</u>
 <u>치도지사·시장</u>·군수·구청
 장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3. ~ 8.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
1. (현행과 같음)
2 <u>시장</u>
3. ~ 8 (현행과 같음)